# 글로벌ETF(미니ETF 포함) 투자일임계약서

\_\_\_\_\_(이하 "고객")과 ㈜파운트투자자문(이하 "회사")은 다음과 같이 투자일임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한다.

### 제 1조 (목적)

본 계약은 계약기간 동안 회사가 고객에게 투자일임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투자일임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회사에 투자일임수수료를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고, 그 밖에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및 기타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 "전용계좌"란 투자일임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본 계약 체결에 수반하여 투자매매업자 내지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새롭게 개설한 계좌를 의미한다.
- 2. "투자일임재산"이란 전용계좌에 예치된 자산(금융투자상품 및 현금을 포함하며, 이하 본 호에서 동일함) 전체를 의미하며, 전용계좌에 예치된 자산은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투자일임을 받은 자산으로 한다(명확히 하기 위하여, 계약체결 이후에 전용계좌에 추가로 예치되는 자산에 대해서는 고객이 투자일임재산을 증액한 것으로 본다).

# 제 3조 (투자대상)

회사가 고객의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그 투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 등으로 한다(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금융투자상품의 소수점 매매를 포함함).

- 가본시장법 제 4 조에 규정된 증권
- 2. 자본시장법 제 5 조에 규정된 파생상품
- 3.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6 조의 2 에 규정된 투자대상자산

# 제 4조 (투자일임의 범위 및 투자일임서비스의 내용)

- ① 고객은 회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투자판단을 일임한다.
  - 1. 투자일임재산의 투자전략 수립 및 자산배분에 관한 사항
  - 2. 투자일임재산의 포트폴리오 구성 및 분석에 관한 사항
  - 3. 투자상품의 가치판단에 대한 사항
  - 4. 투자대상의 종류, 종목, 수량, 가격에 대한 사항
  - 5. 투자대상의 매매의 구분, 방법 및 시기에 대한 사항

- 6. 그 밖의 제 1 호 내지 제 5 호와 관련된 부수업무
- ② 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투자일임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계약에 따른 투자일임재산의 운용
  - 2. 투자일임재산의 운용결과에 대한 보고
  - 3. 그 밖의 투자일임재산 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제 5조 (투자일임서비스의 제공방법)

- ① 회사는 고객에게 투자일임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고객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위험선호의 정도 및 투자예정기간 등을 사전에 파악함으로써 고객의 의사를 투자일임재산 운용에 최대한 반영한다.
- ② 고객은 자기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회사의 임직원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의 임직원은 그 요청에 성실하게 응한다.
- ③ 본 계약에 의한 투자일임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고객은 전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애플리케이션과 전용계좌를 회사가 투자일임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장애가 없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예를 들어, 전용계좌의 비밀번호 오류 등으로 정상적인 조회나 주문 집행이 어렵거나, 애플리케이션을 최신 버전으로 유지하지 아니하거나, 애플리케이션이 지원하지 않는 버전의 휴대전화 OS 를 사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투자일임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정상적으로 제공되지 않을 수 있다).
- ④ 고객은 전용계좌를 투자일임서비스를 제공받는 목적으로만 이용하기로 하고, 그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데 동의하며, 특히 투자일임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전용계좌에 투자일임재산 이외의 자산을 예치해서는 아니된다.
- ⑤ 회사는 전용계좌에 예치된 자산 전체에 대하여 투자일임서비스를 제공한다.
- ⑥ 고객이 본 계약을 위반하거나 투자일임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건을 달성하지 못하는 등 회사의 책임 없이 투자일임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회사는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투자일임재산에 대한 운용을 중지(이하 "운용중지")할 수 있다.

### 제 6조 (이해상충방지)

- ① 회사는 고객에게 투자일임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의무를 이행한다.
- ② 회사는 고객 이익 우선의 원칙에 따라 투자일임서비스를 제공하며, 모든 고객의 이익을 동등하게 다루도록 한다.
- ③ 회사는 고객과 회사 간 또는 고객과 다른 고객 간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유지하며, 이해상충을 방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 7조 (투자일임수수료)

① 고객은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일임서비스의 대가로서 [별지 1]세부계약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본수수료와 성과수수료를 회사에게 지급한다.

- 1. 기본수수료는 투자일임재산 금액을 기준으로 [별지 1]세부계약조건의 기본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징수하는 수수료이다.
- 2. 성과수수료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성과와 연동하여 고객과 합의한 기준에 따라 징수하는 수수료이다. 성과수수료를 지급하는 계약의 경우 성과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계약보다 높은 투자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 ② 투자일임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 이외의 제 3 자에게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세금, 수수료, 보수 등의 비용은 고객이 부담하여야 한다.

### 제 8조 (고객의 재무상태 및 투자목적 등의 변경)

- ① 고객은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이 변경된 경우 회사에 이를 통지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연 1 회 이상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를 확인하고, 분기마다 1 회 이상 고객에게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회신해 줄 것을 통지한다.
- ③ 회사는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확인한 경우 변경된 내용에 부합하도록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한다.

### 제 9조 (업무의 위탁)

회사는 투자일임업무와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및 관계법규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영위하는 업무의 일부를 제 3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 10조 (투자결과 등의 통보)

- ① 회사는 매 분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보고서(이하 "투자일임보고서")를 작성하여 분기말로부터 2 개월 이내에 고객에게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이하 "전자우편등")으로 교부한다.
  - 1. 운용경과의 개요 및 손익 현황
  - 2. 투자일임재산의 매매일자, 매매가격, 위탁수수료 및 각종 세금 등 운용현황
  - 3. 투자일임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잔액현황, 취득가액, 시가 및 평가손익
  - 4. 투자일임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및 금액
  - 5. 투자일임재산을 실제로 운용한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 6. 성과보수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경우 기준지표의 성과와 성과보수 지급내역
  - 7. 투자일임재산 중 특정자산을 회사의 고유재산과 거래한 실적 (시기, 실적, 잔액)
  - 8.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활용하여 투자일임업을 수행하는 경우 투자일임재산을 실제로 운용하는 전자적 투자조언장치에 관한 사항 및 해당 전자적 투자조언 장치를 유지 · 보수하는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 9. 기타 자본시장법 및 관계법규상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고객은 투자일임보고서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교부받기를 원하는 경우, 회사의 고객센터를 통해 직접 또는 우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고객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투자일임보고서를 교부한다.

③ 회사는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라 교부한 투자일임보고서가 3 회 이상 반송된 경우 고객이 요구할 때 즉시 교부할 수 있도록 지점이나 그 밖의 영업소에 투자일임보고서를 비치하는 것으로 그에 갈음할 수 있다.

### 제 11조 (투자일임재산의 운용방법)

- ① 회사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2 조 제 6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활용하여 고객의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한다.
- ② 고객은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에 대하여 합리적인 제한(본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용조건 등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함)을 두거나 특정증권 등의 취득·처분 및 계약의 해지(이하 이 조에서 "운용방법 변경 등"이라 함)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본 계약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객의 운용방법 변경 등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
- ③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에 의한 투자일임서비스는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활용하는 운용방법의 특성상 고객의 운용방법 변경 등 요구를 투자일임재산 운용에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음에 따라, 이러한 경우 회사는 고객의 운용방법 변경 등 요구를 반영하기 어려움을 회신하며, 고객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제 12조 (전자적 투자조언장치에 관한 사항)

- ① 회사는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유지 보수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1 인 이상 둔다.
- ② 회사가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기존 전자적 투자조언장치와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단순 수정, 개선하는 등 관계 법령상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 ③ 고객은 제 2 항 본문에 따른 전자적 투자조언장치 교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전자적 투자조언장치 관련 유의사항은 [별지 1] 및 투자권유문서 기재와 같다.

# 제 13조 (비밀유지의무)

- ① 고객은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회사가 투자일임업무 수행 중 제공한 내용을 제 3 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되며, 회사의 투자일임서비스를 제 3 자와 공동으로 이용하지 못한다.
-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고객의 투자일임재산 내용과 관리현황, 신상내용 및 그 밖의 모든 사항에 대해 비밀을 지켜야 한다. 다만, 관계법규에 따라 회사가 해당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③ 회사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 전용계좌가 개설된 영업점에 전용계좌 관련 자료를 요청하거나 전산으로 조회할 수 있다.

#### 제 14조 (통지의무)

- ① 고객은 전용계좌가 개설된 증권회사, 지점 및 해당 계좌번호, 제 2 항에 따른 [별지 1] 기재 통지처, 고객의 주소 및 기타 연락처, 그밖에 회사의 투자일임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에 관해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고객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지체 없이 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회사와 본 계약의 유지 또는 해지 여부를 협의하도록 하며, 회사는 이러한 경우 고객의 상속인과의 협의 내용에 따라 본 계약의 유지 또는 해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 ② 회사가 이 계약에 의하여 고객에게 하는 통지의 방법 및 통지처는 [별지 1] 세부계약조건 기재에 따른다. 다만, 고객이 사전에 그 통지방법 또는 장소를 달리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된 방법 또는 장소에 따른다.
- ③ 고객이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 1 항의 통지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 15조 (운용결과의 귀속)

회사에 대한 투자일임은 시장상황의 예측, 목표수익률의 달성, 투자성과 및 원금보전 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투자일임재산의 운용 결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한 결과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은 고객에게 귀속된다.

### 제 16조 (회사의 금지사항)

회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관계법규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1. 고객으로부터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예탁을 받는 행위
- 2. 고객에게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고객에 대한 제 3 자의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의 대여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 3. 투자<del>운용</del>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일임업을 수행하게 하는 행위. 단,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활용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4.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 5.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 3 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단, 다음 각목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가. 투자일임재산의 운용과 관련한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 나. 차익거래 등 투자일임재산의 운용과 관련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 6. 회사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투자일임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 단, 다음 각목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가. 인수일부터 3개월이 지난 후 매수하는 경우
- 나. 인수한 증권이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특수채증권 또는 사채권(주권 관련 사채권 및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은 제외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다. 인수한 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인 경우로서 그 주권을 증권시장에서 매수하는 경우
- 라.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투자일임재산에 유리한 거래인 경우
- 7. 회사 또는 관계인수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수업무를 담당한 법인의 특정증권 등에 대하여 인위적인 시세를 형성하기 위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그 특정증권 등을 매매하는 행위
- 8. 특정고객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 3 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9. 투자일임재산으로 자기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일임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단, 고객의 요구에 따라 동일한 고객의 투자일임재산 간에 거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10. 투자일임재산으로 회사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단, 다음 각목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가. 이해관계인이 되기 6개월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거래인 경우
  - 나. 증권시장 등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개시장을 통한 거래인 경우
  - 다.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투자일임재산에 유리한 경우
  - 라. 환매조건부매매
  - 마.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를 통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아닌 자와 행하는 투자일임재산의 매매
  - 바.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차입하여 매도하는 거래인 경우
- 11. 고객의 동의 없이 투자일임재산으로 회사 또는 그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12. 투자일임재산을 각각의 고객별로 운용하지 아니하고 여러 고객의 자산을 집합하여 운용하는 행위. 단, 개별 투자일임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투자대상재산의 매매주문을 집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투자일임재산 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13. 고객으로부터 다음 각목의 행위를 위임받는 행위
  - 가. 투자일임재산을 예탁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그 밖의 금융기관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 나. 투자일임재산을 예탁하거나 인출하는 행위
  - 다. 투자일임재산에 속하는 증권의 의결권,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 단, 주식매수권의 행사, 공개매수에 대한 응모, 유상증자의 청약, 전환사채권의 전환권 행사, 신주인수권부사채권의 신주인수권 행사, 교환사채권의 교환청구, 파생결합증권의 권리 행사 등 관계법규에서 허용된 행위는 예외로 한다.
- 14. 본 계약을 위반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 15. 투자일임의 범위,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투자일임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지나치게 자주 매매하는 행위

- 16. 고객 또는 거래상대방 등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직·간접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들로부터 제공받는 행위
- 17. 고객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투자운용인력을 교체하는 행위. 단, 본 계약에서 부득이하다고 기재한 경우를 제외한다.
- 18. 투자일임재산의 <del>운용</del>내역 및 자산의 평가내역에 대한 고객의 조회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 19. 정당한 사유없이 투자자의 운용방법의 변경 또는 계약의 해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
- 20. 기타 자본시장법 및 관계법규에서 투자일임재산 운용과 관련하여 금지하는 행위

#### 제 17조 (면책)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 1. 천재지변, 전시·사변, 인터넷서비스나 통신기기·회선장애 등 회사가 직접 관리하지 않는 시설물 또는 시스템의 하자,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불가항력이라고 인정되는 사유에 의한 계약이행의 불능 또는 지연
- 2. 서류 및 서명, 인감(또는 서명감) 등을 상당한 주의로 대조하고 틀림이 없다고 인정하여 업무처리 하였음에도 위조 도용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 3. 고객지시에 따른 운용 및 기타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손실

### 제 18조 (계약 기간 및 갱신)

- ①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별지 1]에서 정한 계약기간으로 한다.
- ② 회사는 계약만료일 1 개월 전까지 고객에게 계약만료일을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하는 경우 "고객은 계약만료일 이전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 및 동일한 기간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③ 고객이 제 2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약만료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 계약과 동일한 기간 및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
- ④ 제 3 항에 따라 갱신된 계약의 투자일임재산은 직전 계약기간 만료일의 평가금액에서 전용계좌에서 지급된 직전 계약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 제 19조 (계약의 해지)

- ① 고객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또는 그 밖에 회사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해지 요청 시 투자일임재산의 매매 주문에 대한 체결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해당 주문의 체결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 해지가 연기될 수 있다.
-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객에게 14 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고객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고객의 계약 위반내용의 시정이 명백히 불가능하거나 계약 위반의 정도가 중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때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고객의 계좌에 가압류, 압류절차, 기타 강제집행 절차가 개시되거나 질권이 설정되는 등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 2. 회사가 연 1회 이상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를 확인하거나 매 분기 1회 이상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 시 회신해 줄 것을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 객이 1년 이상 이에 대해 회신하지 않은 경우
- 3. 투자일임재산 인출에 따라 투자일임재산이 [별지 1]에서 정한 최소운용금액과 출금신청일 기준 예상 성과수수료를 합산한 금액 미만이 되는 경우(다만, 투자일임재산의 운용 결과 위금액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함)
- 4. 고객이 사망하였음에도 그 상속인이 지체 없이 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전용계좌가 개설된 증권회사의 투자일임재산 상속 절차상 투자일임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 이전, 전용계좌 명의 변경 등 전용계좌 및 전용계좌에 예치된 투자일임재산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5. 고객의 투자성향 분석 결과가 본 계약에 따른 투자일임서비스를 제공받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 6. 고객이 본 계약 또는 기타 회사와 체결한 약정을 위반한 경우
- ③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경영상의 이유, 관련 법령이나 규제의 변화, 금융감독당국의 지도 등에 따라 투자일임서비스의 주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투자일임서비스를 종료하게 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14 일 전까지 고객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④ 계약의 해지는 해지일 이전에 투자일임에 의하여 실행된 거래와 해지일 이전에 제공된 투자일임서비스에 대하여 고객이 지불하여야 할 수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제 20조 (계약 개시 및 종료 시의 재산형태)

- ① 고객과 회사가 계약을 개시하는 시점의 재산형태는 현금(원화)을 원칙으로 한다.
- ② 고객과 회사가 계약을 종료(명확히 하기 위하여,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갱신된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시점 및 운용중지 시점에 고객에게 반환하는 재산형태는 현금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제 1 항 및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고객과 회사가 사전에 합의한 경우, 각 시점의 재산형태는 해당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투자상품은 공정한시세가 있는 투자물에 한한다.

# 제 21조 (투자일임재산의 평가)

투자일임재산의 평가는 고객과 회사 간 별도 합의가 없는 경우 계약체결 시에는 계약일, 계약해지 시에는 해지요청일, 계약만료 시에는 만료일, 운용중지 시에는 해당 운용중지 지시일(이하 "평가기준일", 다만 평가기준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전 영업일을 평가기준일로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평가한다.

1. 계약체결 또는 계약 갱신이 이루어지는 경우 직전 계약의 만료 : 자본시장법 제238조(집합 파운트 글로벌ETF/미니ETF 투자일임계약서 8

- 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 등)에 의한 재산 종류별 평가방법
- 2. 계약해지, 갱신 없는 만료 또는 운용중지 : 자산 처분 후 원화 환산 금액(다만, 제20조 제3 항에 따라 계약해지, 만료 또는 운용중지 시점 보유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으로 정할 경우 제 1호에 따른 평가방법)

### 제 22조 (투자실적의 평가)

- ① 투자수익은 계약시점에서의 평가자산과 계약기간 중 납입 · 인출된 평가자산을 가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기준일 현재 투자일임재산 순자산가치 증가금액으로 한다. 이 때 평가자산의 계산은 제 21 조의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 ② 증권(투자일임재산에 편입한 금융투자상품의 기초자산이 되는 증권을 포함함)에 있어 배당, 유무상 증자에 의한 배당락이나 권리락이 이루어졌으나 배당이나 증자분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는 배당락 가격, 권리락 가격 등으로 평가한 후 배당 또는 유무상 증자분을 평가에 포함한다.

#### 제 23조 (계약의 변경)

- ① 회사는 본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계약의 시행일 1 개월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규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계약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계약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 ② 제 1 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변경되는 계약의 시행일 1 개월 전까지 고객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회사는 제 2 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계약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계약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④ 고객이 제 3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계약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제 24조 (세부계약조건)

본 계약의 본문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고객과 회사가 합의한 세부계약조건의 내용은 [별지 1] 세부계약조건에 따른다.

### 제 25조 (관계법규 등의 준용)

- ①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습에 따른다.
- ② 본 계약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 제 26조 (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제 27조 (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고객과 회사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 계약서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고객에게 제공된다. 고객과 회사는 본 계약의 모든 조항을 확인하고 그 내용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데 동의한다.

년 월 일

**(고객)**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회사) 상호 : 주식회사 파운트투자자문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스퀘어

사업자등록번호: 374-87-00450

대 표 이 사: 김민복

#### [별지 1] **세부계약조건**

#### 1. 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합니다. 다만,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이 최초로 개시된 해 에 한하여 계약만료일이 운용개시일로부터 1년째 되는 날로 자동 연장됩니다.
-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은 전용계좌에 최소운용금액 이상이 입금된 때로부터 개시합니다.
- 제18조 제2항에 따른 통지 후 계약 만료일까지 고객으로부터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종전 계약과 동일한 기간 및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됩니다.

#### 2. 투자일임재산

- 최소운용금액은 소수점 매매를 활용하지 않는 기본 글로벌ETF 상품(이하 "글로벌ETF(기본)") 은 200만원, 소수점 매매를 통한 글로벌ETF 상품(이하 "미니ETF")은 20만원입니다. (원금기 준)
- 단, 글로벌ETF(기본) 상품의 경우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을 위하여 500만원 이상 운용을 권장합니다. 권장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MP(모델포트폴리오)와의 일치도가 다소 낮아질 수 있습니다.
- 계약갱신 시 갱신된 계약의 투자일임재산은 직전 계약기간 만료일의 평가금액에서 전용계좌에 서 지급된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3. 투자일임수수료

① 기본수수료: 없음

② 성과수수료: 고객과 별도 합의함

③ 중도해지수수료: 없음

※ 계약기간 중 계약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계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이상 수수료는 변경 후 계약을 기준으로 잔존 계약일수에 대해 산정한 수수료와 기존 계약을 기준으로 경과한 계약일수에 대해 산정한 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으로 함.

#### 4. 수수료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성과수수료는 계약 만료일(명확히 하기 위하여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직전 계약의 만료일을 포함함), 계약 해지일 또는 고객의 운용지시에 따른 운용중지일에 발생하며, 각 해당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매도 또는 환전(자동환전을 지원하는 상품에 한함)에 소요되는 기간에 따라 수수료 지급까지 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성과수수료는 고객의 '수수료 <del>출금</del>이체 동의'에 의하여 회사가 정산하여 수령하며, 고객이 별 도로 회사 계좌로 이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 글로벌 ETF(기본) 상품의 성과수수료는 전용계좌 내 현금에서 우선 지급됩니다. 다만, 전용계좌 내 현금의 잔고가 회사가 받고자 하는 수수료보다 부족한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5 영업일 내에 현금을 납부할 것을 요구하며, 고객은 같은 기한 내에 현금을 회사에 납부하거나 또는 전용계좌 내 재산을 처분하여 수수료로 사용하도록 지시하여야 합니다. 위 5 영업일 이내에 고객이 현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전용계좌 내 자산을 처분하여 수수료로 사용할 것을 지시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수수료 수취를 위하여 아직 내지 않은 수수료에 해당하는 전용계좌 내 재산을 고객과 합의한 방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습니다.
- 미니 ETF 상품의 성과수수료는 계약 체결 당시 고객이 지정한 계좌(이하 "지정계좌")에서 지급됩니다. 다만, 지정계좌 내 현금의 잔고가 회사가 받고자 하는 수수료보다 부족한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5 영업일 내에 현금을 납부할 것을 요구하며, 고객은 같은 기한 내에 현금을 회사에 납부하거나 또는 지정계좌에 해당 금액을 입금하여 회사가 수수료를 출금이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5. 투자일임재산의 인출

- 계약기간 중 투자일임재산의 <del>출금은</del> 최소<del>운용금액과 출금</del>신청일 기준 예상 성과수수료의 합산 액을 제외한 범위에서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del>출금</del>신청일로부터 10영업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전용계좌를 개설한 증권사를 통해 인출이 가능합니다.
- 갱신 없이 계약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만료일 또는 계약해지일로부터 10영업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전용계좌를 개설한 증권사를 통해 인출이 가능합니다. 단, 글로벌ETF(기본) 상품의 경우 투자일임재산에서 계약만료일 또는 계약해지일 기준 예상 성과수수료를 제외한 범위에서만 출금 가능합니다.
- 계약 해지 또는 갱신없는 만료 시 자동 환전 지원 여부는 전용계좌가 개설된 증권사의 시스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앱의 해지신청 화면 안내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투자일임재산의 처분 및/또는 환전이 지연되는 경우 위 기한보다 인출가능일자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 6. 전자적 투자조언장치 및 유지보수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 ① 투자일임재산 운용에 활용된 전자적 투자조언장치
  - 알고리즘 : 파운트 블루웨일(ETF) 1.0
  - 위 알고리즘은 테스트베드의 1차 운용심사 및 1차 시스템 심사를 통과함(상세 유의사항은 아래 '전자적 투자조언장치 관련 유의사항'항목 참조).
- ② 전자적 투자조언장치 유지보수 전문인력

#### 성명 주요경력

#### 신정재

- ㈜파운트투자자문 <del>운용총</del>괄책임자 (현재)
- 신한자산운용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전담운용팀 팀장
- 우리투자증권 리스크관리부
- Stanford University 통계학 석사

※ 위 전문인력은 전자적 투자조언 장치의 개발 및 유지보수에 관여하였으며, 전자적 투자조언 장치를 활용하여 고객의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합니다.

※ 위 전문인력은 금융투자업규정 제1-2조의2 제2호 및 [별표 29]에 따른 전자적 투자조언장치 유지 보수 전문인력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습니다.

#### 7. 투자일임 대상 계좌 (전용계좌)

- 증권사(지점):
- 계좌번호:
- 계좌소유자:

#### 8. 고객에 대한 통지방법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파운트 앱, 카카오알림톡 포함), 문자메시지 또는 개인이메일

#### 9. 기타 특약사항

- 고객의 '수수료 출금이체 동의'는 본 계약의 필수 요건으로 해당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고객이 계약기간 중 해당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회사는 제19조 제2항에 따라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갱신 없이 계약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되고 수수료 수취가 완료되는 경우 고객의 '수수료 출금이체 동의'는 자동으로 철회됩니다.
- 관계법규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회사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발행하거나 운용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여 그 발행, 운용 또는 거래에 관여하는 금융투자상품을 투자일임재산에 편입할 수 있습니다.

#### 10.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로보어드바이저") 유의사항

- 로보어드바이저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한 알고리즘 및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투자자의 성 향에 맞는 투자자문・일임・운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자산관리서비스입니다.
- 로보어드바이저는 평균적인 가정을 기반으로 제시되는 투자조언으로서 금융시장의 모든 변수를 반영하지 못하며, 시장상황 등에 따라 손실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해 실현된 기존의 수익률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로보어드바이저는 투자자 성향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일임이 이루어지므로 효율적인 투자일임을 위해서는 투자자의 정확한 답변이 중요하며,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답변은 잘못된 운용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투자자는 알고리즘의 특징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에 임해야 합니다.
- 본 투자일임서비스에 활용되는 로보어드바이저 알고리즘은 테스트베드(분산투자, 투자자성향

분석, 해킹방지체계 등 투자자문 · 일임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율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의 1차 운용심사 및 1차 시스템 심사를 통과하였습니다. 단, 테스트베드는 로보어드바이저 알고리즘의 합리성, 법규 준수성, 시스템의 안정성 등을 확인하는 절차로 서, 알고리즘의 수익성 및 품질을 검증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이에 따라,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로보어드바이저가 테스트베드를 통과하지 않은 로보어드바이저에 비해 안정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을 수 있으나, 반드시 더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테스트베드 참여여부와 상관없이 로보어드바이저의 자문·일임과정에 사람의 개입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시장상황의 급변 등 필요시에는 투자운용인력의 판단이 개입될 수 있습니다.

# [별지 2]

# ■ 회사 개요

회사명	파운트투자자문
대표자	김민복
주요사업	투자자문/투자일임
자본금	11억 250만원
최대주주	주식회사 파운트(지분율: 100%, 대표이사: 김영빈, 최대주주: 김영빈)
금융위원회 등록번호	투자일임업: 6-2-1 투자일임업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8-57호, 2018. 2. 27. 등록) 투자자문업: 5-2-1 투자자문업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7-294호, 2017. 11.7. 등록)

# ■ 회사의 임원에 관한 사항

성명	직급	주요경력
김민복	대표이사	<ul> <li>㈜파운트투자자문 대표이사</li> <li>㈜파운트 이사</li> <li>삼성증권㈜</li> <li>Cornell University 박사</li> <li>University of Washington 수학과 석사</li> <li>서울대학교 수학과 학사</li> </ul>
최봉근	사내이사	<ul> <li>㈜파운트투자자문 이사</li> <li>City University of Hong Kong 재무금융학 교수</li> <li>University of Chicago 경제학과 석사/박사</li> <li>University of Minnesota 수학과 학사</li> <li>서울대학교 경제학부 학사/석사</li> </ul>
김영빈	기타비상무이사	<ul> <li>㈜파운트 대표이사</li> <li>보스턴컨설팅그룹인터내셔날 시니어컨설턴트</li> <li>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석사</li> <li>서울대학교 경제학부 학사</li> </ul>

이재훈	감사
-----	----

- ㈜파운트투자자문 감사
- 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전임교수
- 한국과학기술평가원 부연구위원
- 법무법인 강호 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석사
- 서울대학교 기계공학부 석사
- 서울대학교 기계공학부 학사

#### ■ 주주에 관한 사항

주주명	주식회사 파운트
주식수	220,500
지분율	100%(최대주주)
비고	대표이사 : 김영빈 대주주 : 김영빈

#### ■ 투자일임업무의 기준 및 절차

- ① 회사의 투자일임서비스 수행에 대한 일반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투자일임업무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기하기 위한 일반 지침
    - 가. 성실한 가치분석 및 투자모델에 따른 객관적 투자자산 가격 분석
    - 나. 데이터 분석에 의한 포트폴리오 구성 및 시장상황에 따른 정기 또는 수시 조정
    - 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위험관리
    - 라. 고객중심의 투자
  - 2. 성실한 조사분석을 근거로 한 가치중심의 합리적 투자: 합리적이고 신중한 투자를 위하여 객 관적인 조사와 분석을 근거로 한 투자결정
  - 3. 투자모델에 입각한 가격분석을 통한 최적의 투자: 투자성과의 안정성을 위해서 과학적인 투자모델을 개발하고 이에 입각한 투자 실행
  - 4. 투자전략 검증·검토 및 리스크 관리: 포트폴리오 구성 전략수립을 위한 내부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전 검증 및 사후 검토를 거치며, 리스크 관리를 위해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하여 포트 폴리오를 재조정하고, 재조정된 결과를 고객에게 다시 고지
- ② 회사는 다음 절차에 따라 투자일임업무를 수행합니다.
  - 1. 계약체결 전
    - 가. 고객 재무상태, 투자목적, 위험선호도 등의 파악
    - 나. 투자일임 관련 투자원리 및 전략 설명
    - 다. 계약권유문서 교부

- 2. 계약 체결
  - 가. 투자일임계약 체결
  - 나. 전용계좌 개설 및 계약에 따른 상품별 최소운용금액 예치
- 3. 일임<del>운용</del> : 알고리<del>즘을</del> 기반으로 고객별 맞춤 투자일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수행 절차에 따라 진행
  - 가. 개별 고객의 위험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고객을 위험 유형별로 분류
  - 나. 시장DATA 분석을 기초로 고객 위험 유형별 최적 포트폴리오 산출
  - 다. 고객 유형별 최적 포트폴리오를 회사 내 자동화 매매시스템에 등록하고 이에 따른 매매신호에 따라 고객별 운용 진행(매수/매도 주문 후 순차적으로 체결 진행되며 매수/매도 절차 개시 후 10영업일 내 체결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시장 상황 및/또는 운용 판단에 따라 체결 시점이 연기될 수 있음)
- 4. 운용성과 통보: 정기적으로 운용성과 통보
- 5. 수수료 수납 : 기본수수료 또는 성과수수료 발생시 회사가 지정하는 방법 또는 고객과 합의 한 방법에 따라 수취

#### ■ 주로 거래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관한 사항

- 회사가 주로 거래하는 증권사는 신한투자증권, KB 증권, 하나증권 등이 있습니다. 회사가 제공하는 자문/일임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제휴된 증권사입니다.
- 파운트 앱을 통해 개설된 하나증권 계좌에 대해, 회사는 하나증권으로부터 계좌개설수수료를 수취합니다.